

『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8월 3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9월 9일

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황 필 섭

나. 폐지이유

- 이 조례는 구미시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제정(2000.12.15)되었으나,
-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인 「전통사찰보존법」 제6조의2 조항이 개정되어 법령상 근거 없는 임의규정이므로 폐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」 폐지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전통사찰보존법」 제6조의2
 -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기 타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폐지조례안은

관내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2000. 12. 15. 제정되었으나 근거 법령인 「전통사찰보존법」 제6조의2 조항이 개정되어 법령상 근거 없는 임의규정이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

○ 주요 내용은

- 「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」를 폐지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본 폐지조례안은

관내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2000. 12. 15. 제정되었으나 근거 법령인 「전통사찰보존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가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